

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◆ **성인지예산제도 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**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·집행하고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

◆ **대상회계 :**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

◆ **대상사업**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구 분	대 상 사 업	비 고
필수	○ 여성정책추진사업	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('13~'17)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
	○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※ 국고보조사업	성별영향분석평가법('12.3.16.시행)에 따른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 예산사업
권장	○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	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(공약 및 주력사업) 중 성별 수혜분석 가능사업 및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◆ **제외대상 :**

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 등

-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-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-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

◆ **성인지 예산서 성격 :**

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, 성인지 예산의 개요,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(예산서 부속서류)